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3. 24. 김석기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 3. 2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8.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4.)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2.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석기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추진
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본
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
광전략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류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 반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규)

○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정책 수립 관련 부처간 협력·조정 등을
위하여 지난 201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관광진흥의 방
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
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열리고 있음.

- 현행법 제3조는 정부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그러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추진실적 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있고 하위법령에도 위임하지 않아 관광 진흥 정책의 환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 관련 사항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진흥정책에 대한 정부의 환류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법 제3조의 관광진흥계획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서와 같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명시할 경우 법률 조항의 해석상 여지를 줄여줌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는 부합할 것으로 보이나, 법 체계적으로 바람직할 것일지 여부와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 체계가 중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정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